경찰법과 자치경찰제의 이해

이 상 훈 교수
(한국경찰학회장· 대전대 경찰학과)



목 차

1.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와 배경

2.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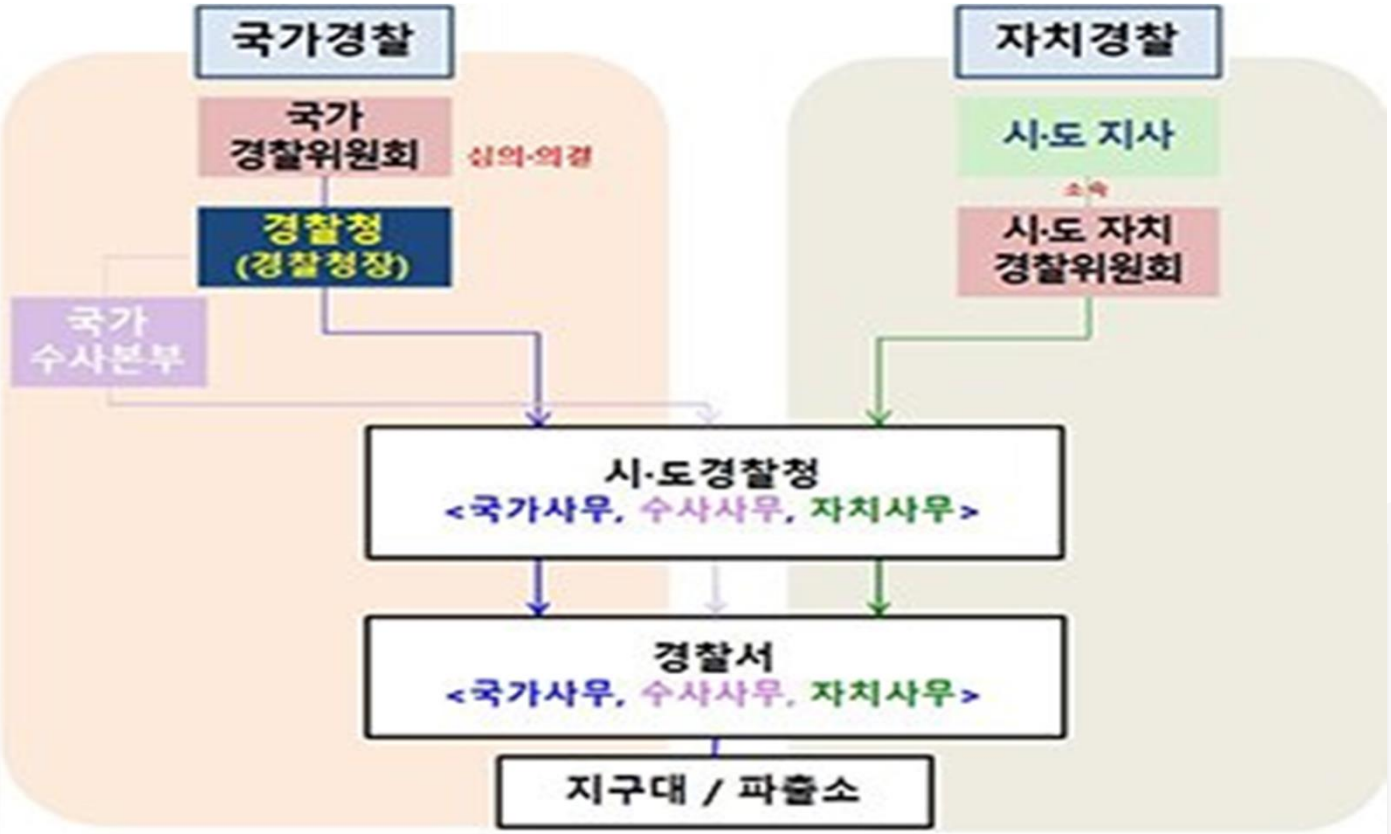
3. 개정 경찰법 개관(체계)

4. 시· 도별 자치경찰 사무 추진사항

5. 자치경찰제의 미래와 입법적 과제

1.1.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조직의 변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1.2.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 소속) 설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행정위원회 **vs.** 자문위원회,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 회피하고 경찰행정의 **민주성**/다양성/이익 대표 확보)
  경찰권의 **분권**화(수사권 조정과 함께 불어난 경찰권 분산), 시도지사 권한 확대 우려 **vs.** 책임주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 남용 금지, 부패 가능성/공정성)

- 지방경찰청→시도경찰청 **改名**(지방정부로의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력)

- 별도의 현장 자치경찰조직 신설 없음(경찰조직 체계 변화의 최소화, 현장 혼란 및 추가비용 최소화)

-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의 터닝포인트(민주적 효율성, 적극행정의 요소로서 **생산적 경쟁** 도입)

1.3. 자치경찰제 시행과 주민주권의 반영

『주민(민주적) 통제 이념이 반영된 경찰법령상의 주요 조항』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시 의견 제시

  시 ·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9항)

-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결과 경찰청장에 통보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경찰법 제30조 제4항)

-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있어서 경찰청장과 협의

  시 ·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경찰법 제28조 제2항)

1.4.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임용권 변화

『주민통제 이념이 반영된 경찰법령상의 주요 조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 임용권(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 제외)

경찰청장은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시 · 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 · 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4항).

<table>
<tr><th>구분</th><th>신규
채용</th><th>승진</th><th>전보</th><th>파견</th><th>휴직</th><th>직위
해제</th><th>복직</th><th>정직</th><th>강등</th><th>해임</th><th>파면</th><th>면직</th></tr>
<tr><td>경정</td><td colspan="2">대통령</td><td colspan="6" rowspan="3">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 가능)</td><td colspan="4">경찰청장</td><td>대통령</td></tr>
<tr><td>경감
경위</td><td rowspan="2">경찰
청장</td><td>시도
지사</td><td rowspan="2">경찰
청장</td></tr>
<tr><td>경사
이하</td><td colspan="11"></td></tr>
</table>

2.1.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1990년대 이전의 도입 논의

1948년

해방 이후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과정에서 미군정과 논의

1955년

시도지사 소속 하에 3인의 지방경찰위원회 설치 논의

1960년

공안자문위원회 설치 건의 (과도정부 경찰행정개혁심의회)

1972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 유지 필요 (내무부 치안행정 기획안)

1989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보수적 입장(내무부 자치경찰제 논의)

2.2.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7년 출범)
  - 1999년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논의(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 경찰위원회 중심의 절충형 도델 (일본형 자치경찰제 모형)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관여 배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형태 추구

2.3.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 출범)

◎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비전 제시

▷2005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자치경찰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구조(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신설)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특정직 지방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 시도에『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지역치안협의회』설치

▷2006년 7월 제주자치경찰제 전격 도입(38명,『제주도특별법』에 근거, 현재 162명+8명)

2.4.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이명박 정부(2008년 출범)

▷ 참여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기초로 함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채택(자치경찰대/『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선택적 도입)
- 치안협력관 배치(시도지사, 국가경찰과 치안협력 및 조정업무)
- 광역 단위에서도 관리·감독 의 역할(『치안행정위원회』, 추가)
- 생활안전, 지역경비, 지역교통, 특별사법경찰 포함
- 국가경찰과의 공동사무 성격
- 업무범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업무협약으로 구체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안(2012년, 이철우 의원)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상정

2.5.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박근혜 정부(2013년 출범)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도 가능하도록 함(통합 자치경찰단 설치)
  - 제도 도입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선택적 도입)
  -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종,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으로 설정
  - 『자치경찰위원회』(시·군·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 설치
  - 재원은 지방소비세, 과태료, 범칙금으로 마련
  - 「자치경찰법」 제정, 「경찰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2.6.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과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 문재인 정부(2017년 출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홍익표 의원안(2원적 자치경찰제) - 19대 국회(자동폐기)

중복 관할과 치안공백 여지 및 고위직 증설에 따른 비용 등 조직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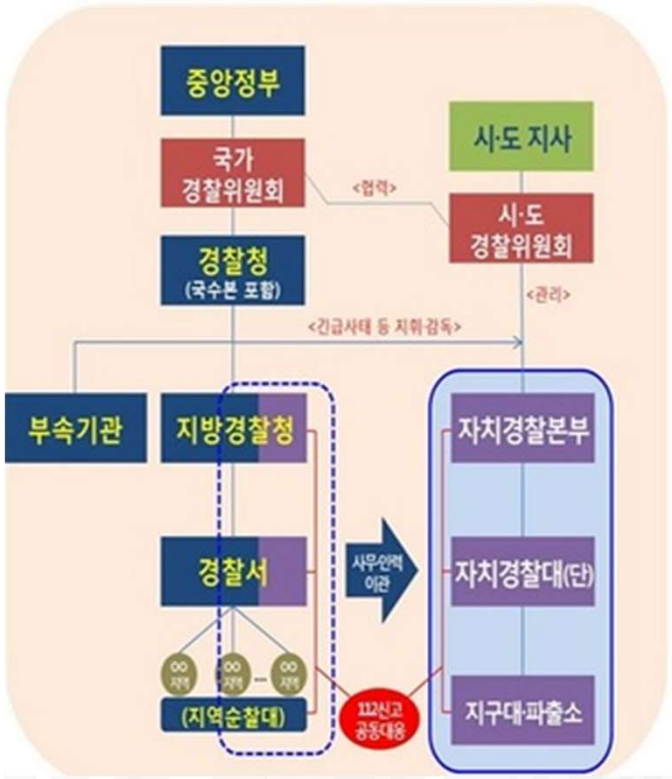
▷ 김영배 의원안(1원적 자치경찰제) - 20대 국회(방향전환 및 통과)

광역단위 일원적 자치경찰제(제도 운영의 경제성/효율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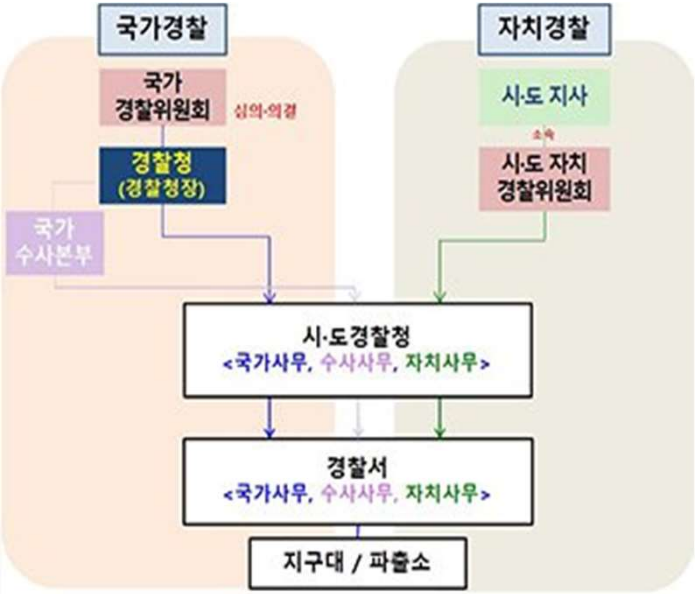
한 지붕 세 가족 경찰조직(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시·도지사 수립(사전 경찰청장 의견 수렴)

2.7.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조직 비교



20대 국회의 이원화 모델



21대 국회의 일원화 모델

2.8.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의 장. 단점 비교

구분	일원화 모델	이원화 모델
장점	· 제도 시행과 정착의 신속성, 효율성 · 예산절감 효과 · 현장 경찰공무원의 신분 안정성 도모 · 시민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	· 지방자치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실현 · 주민참여 활성화에 유리 · 지역별 치안수요에 맞는 맞춤형 경찰활동 촉진 ·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질적 범위 확대 가능성
단점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한계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찰활동 실현 가능성 모호 · 시 · 도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확보 미지수	· 소요 예산의 대폭 상승에 따른 효율성 저하 · 업무 혼선과 초동조치 미흡 등 치안 공백 우려 · 경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조 미흡 · 시행 초기 변화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불편 야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약칭: 지방분권법)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3. 5. 28.>

2.9.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과정

구분	3월(1)	4월(6)	5월(11)
시·도	충남 (3.22)	강원(4.2), 부산(4.7), 대전(4.9), 인천(4.9), 제주(4.14), 세종(4.15)	경남(5.3), 경기남·북(5.7), 광주(5.10), 대구(5.10), 울산(5.13), 경북(5.20), 전남(5.20), 서울(5.20), 충북(5.20), 전북(5.28)

2.10.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과정(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일 기준)

구분	3월/4월(3)	5월(11)	6월(3)	7월(1)
시·도	충남(3.31), 강원(4.2), 대전(4.29)	부산(5.6), 제주(5.6), 광주(5.10), 경남(5.10), 울산(5.13), 세종(5.13), 인천(5.17), 대구(5.20), 충북(5.20), 경북(5.20), 전남(5.25)	경기남부, 서울, 전북	경기북부

3.1. 개정 경찰법 개관(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제3장 경찰청
- 제4장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 제5장 시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 제8장 보칙
- 부칙

3.2. 개정 경찰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일원적 자치경찰제(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 개념구분)
- 사무 별 지휘·감독권자 분산(**시도경찰청장**의 역할 부각)
- 시도단위 자치경찰제 (시도경찰청: **정책기능에서 집행기능으로**)
-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실질화 역량)
-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주민의 참여 확대)
- 국가경찰위원회(형식적 기구로 유지에서 실질화 논의 점화)
-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제, 형식적 심의의결권, 사무국 부재)

3.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

| 국가경찰 개념

국가공안사무: 광역사건, 대간첩 대테러작전, 경호와 경비 등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사무 등
전국적 통일사무: 통신, 교육훈련 등

| 자치경찰 개념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국가경찰과 공동사무)
특별사법경찰: 보건위생환경건축 등 사무에 사법경찰권 부여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3.4.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세부 구분

▸ **자치경찰사무** -경찰법 시행령 별표 및 자치경찰조례 별표 사무

- **(생활안전)** 범죄예방진단·활동, 주민참여방범활동, 풍속, 보호조치, 유실물 등
- **(여성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SPO), 학대전담경찰관(APO), 성·가정폭력예방 등
- **(교통)** 정보센터, 무인단속, 사고분석, 사고조사, 싸이카, 순찰차 등

▸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外, 전국적 기준 제시와 통일적 관리 필요 사무

- **(생활안전)** 총포·화약 안전관리, 경호안전검측, 경비업 허가, 즉결심판 업무
- **(여성청소년)** 성폭력 수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해바라기센터), 학교폭력신고(117센터)
- **(교통)** 운전면허 제도운영, 경호·집회 교통관리, 과태료, 교통범죄 수사, 고속도로 관리

3.5. 시·도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분류 기준(복지예산 관련)

구분	기준율(자치경찰 사무 비율)	인원(명)	구분	기준율(자치경찰 사무 비율)	인원(명)
서울	51% 이상	3,800	경기남부	50% 이상	2,661
부산	50% 이상	1,381	강원	50% 이상	648
대구	50% 이상	900	충북	50% 이상	520
인천	50% 이상	1,041	충남	50% 이상	712
광주	50% 이상	520	전북	50% 이상	749
대전	순수 국가사무 담당 경찰관 제외	570	전남	50% 이상	776
울산	50% 초과	444	경북	50% 이상	945
세종	50% 이상	80	경남	50% 이상	1,015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② 시 ·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 · 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 · 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비교

구분	국가경찰위원회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행정안전부에 둔다.	. 시 ·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명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 ·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 ·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 ·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3.7.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괄호 안, %)

구분	교수	법조인	(前)경찰	(前)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비고
합계 (126명)	42 (33.3)	28 (22.2)	29 (23.0)	17 (13.5)	8 (6.3)	2 (1.6)	여성 25(19.8%) 인권 27(21.4%)
서울	2	2	3	-	-	-	여성 1, 인권 1
부산	2	2	1	1	1	-	인권 1
대구	6	-	-	1	-	-	여성 2, 인권 1
인천	2	2	1	2	-	-	여성 1, 인권 1
광주	2	2	1	-	1	1	여성 2, 인권 3
대전	3	1	1	2	-	-	
울산	1	2	2	-	2	-	여성 2, 인권 4
세종	2	3	1	1	-	-	여성 2, 인권 3

▶ 위원 구성의 다양성 검토

*남성위원 101명(80.2%), 50-60대 위원112명(88.9%) → 50대(16%), 60대 이상(23%) 남성의 "과잉 대표성"

**30대 이하(44%)와 40대(16%)의 60%의 의사 대변 도구 필요

***위원장과 사무국장(상임위원)에 여성과 40대는 全無, 사무국장의 경우 경찰출신 82%

제19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性 기준 준수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교수	법조인	(前)경찰	(前)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비고
경기 남	-	2	4	1	-	-	여성 3, 인권 2
경기 북	2	1	2	1	1	-	여성 2, 인권 1
강원	4	1	1	1	-	-	인권 1
충북	4	1	1	1	-	-	여성 2
충남	2	2	2	1	-	-	여성 1, 인권 1
전북	3	1	2	1	-	-	여성 1
전남	3	1	2	-	1	-	여성 1, 인권 1
경북	1	2	1	2	1	-	여성 3, 인권 2
경남	3	2	2	-	-	-	인권 3
제주	-	1	2	2	1	1	여성 2, 인권 2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②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9.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
6. **시 · 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3.10.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 · 조정
14.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 · 도지사, 시 · 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11.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포함)을 **직접 지휘 · 명령**할 수 있다.
1. 전시 ·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 · 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 · 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 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 · 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 ·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 · 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 · 조정의 범위 · 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 ·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 · 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1. 시 · 도 별 자치경찰 사무 추진 사항

지역	주요 시책	
서울특별시	▪ 한강공원순찰대(가칭) 신설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
부산광역시	▪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 수립	▪ 자치경찰에 치안 리빙랩(Living lab) 개념 도입
대구광역시	▪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발족' ▸1그룹 (정책 분과위원회) - 위원회↔대구시 시민단체 ▸3그룹 (청년 분과위원회) - 위원회↔폴리스 유스 · 틴 · 키즈	▸2그룹 (협력 분과위원회) - 위원회↔자율방범대 · 녹색어머니회 ▸4그룹 (현장경찰 분과위원회) - 위원회↔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인천광역시	▪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 선정	
광주광역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대전광역시	▪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추진	
울산광역시	▪ '더 빠르고 충실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 추진	

4.2.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별 주요시책 추진 현황

강원도	▪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선정 · 추진
충청북도	▪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운영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 · 지원 등 대응 강화 ▪ 지역별 · 시기별 농산물 도난예방 종합대책 추진
충청남도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개설
전라북도	▪ 사회적 약자(아동 · 청소년) 종합 안전대책
전라남도	▪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경상북도	▪ 자치경찰의 활동 방향 설정 및 도민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방문 간담회 실시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충'사업을 우선 추진과제
경상남도	▪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휴가철 안심 제주 4YOU(성범죄예방, 교통사고예방, 순찰강화, 방역확보)' 선정

4.3. 시범운영 기간의 주요 성과와 한계

| 주요성과

(1) 지역실정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 치안정책 추진
(2)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토대 구축
(3) 주민 거버넌스 연계 및 협력 확대로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4) 자치경찰의 사기진작 기회 마련

| 운용상 한계

(1) 시 · 도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제도취지 이해부족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실질화 미흡
(3) 자치경찰제 소요비용의 국가재정지원 불투명
(4) 자치경찰 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법적 근거 결여

4.4. 연계협력의 당사자

① 건축 및 도시계획행정과의 연계협력

-범죄위험 조사보고서를 기반한 범죄지도(crime map) 협업 제작

-환경설계범죄예방(CPTED) 사업의 협업 운영

② 교통행정과의 연계사무

-교통 취약요소 판단 – 신호기・횡단보도・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심의・예산편성・시설물 관리 – 교통흐름의 관리 – 교통단속의 일련의 교통관리

③ 보건행정과의 연계사무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마약, 약물 등에서 경찰-진압/분리, 의료진-전문치료 협업

④ 사회복지행정과의 연계사무

-아동학대 가해자 제압 이후 피해아동 쉼터와 가해자 교육 등 협업

-노인 안전 및 복지업무의 경우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정보 공유

⑤ 교육행정과의 연계사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과 협업

4.5. 제주형 행정복합치안센터 조직 및 관할

구 분		송당행복치안센터	저지행복치안센터
운영 형태		마을사무소 연동형 (마을사무소 내 치안센터 운영)	사무확장형 (기존 1인 치안센터 활용)
인원/장비		자치경찰 2명/순찰차 1대, 전기삼륜차 1대	자치경찰 2명/순찰차 1대, 전기삼륜차 1대
관할	면적	39㎢	15㎢
	인구	468세대 1,031명	653세대 1,332명

※ 자료 : 국무조정실, 2021: 3.

4.6. 행정복합치안센터의 주요 활동

구분	내용
복지-치안행정융합	코로나-19 민.경 방역활동, 독거노인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독거노인 대상 마스크 전달 및 건강상태 문답형 체크
재난-치안행정융합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비상근무 실시, 하산 안내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사이렌 취명 등 활동으로 전년 대비 길 잃음 사고 24% 감소 효과
보건-치안행정융합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치매환자 돌봄 및 조기 검진 지원
축산-치안행정융합	반려견 안전활동 홍보 및 유기견(들개) 포획틀 자체 제작, 포획활동 강화
소방-치안행정융합	산림. 오름 등지 흡연 및 농작물 소각금지 홍보, 기상악화에 따른 큰 불이나 방치된 소각 현장 초기 진화활동

※ 자료 : 제주자치경찰단, 2021.

5.1. 자치경찰제의 미래와 입법적 과제

- 영국과 프랑스 등 중앙정부 권한 강화 및 광역화 경향(기능적 분권)
  국가경찰 기능의 강화 병행 / 행정수요와 같이 확대 예상

- 독일의 통일(1990년)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는 과도기적인 것이며 제도보장 아닌 제도적 보장(1940년대)
  완전한 국가통합이 되면 없어질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전면화(바이에른주의 주민참여 확대)
  "보다 많은 민주주의"

- 재정적 기반 명확히
  사무국 운영비 국비지원, 국고보조금의 한정적 용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재정도 함께 이관 원칙)

5.2. 자치경찰제 중장기 로드맵



1. **실질적 자치권 확대** : 시도에서 시· 군· 자치로의 확산되는 주민・공동체 주도형 안착

2. **주민 참여형 치안협의체**
- "주민자치회" 외에 별도의 조직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일 기능으로 접목
-ex)서울시 '우리동네 주무관' 제도: **"일 없이 만난다." 가 일이 되는 사무**
-기존 민간 스스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게 해야(경찰업무의 접점 찾기가 중요)

3. **연계협력 행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결고리 확보가 핵심

THANK YOU

